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31호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6-26, 116-40, 116-49, 116-69, 116-71
- 면 적 : 2,027.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2년 8월 4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상봉청년주택
- 대표자 성명 : 이 광 서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984호(별내동, 별내로테오몰)
- 법인등록번호 : 110111-7955549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중랑구 상봉동	116	26	대	32.6	32.6	[위탁자] 주식회사 상봉청년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984호 (별내동, 별내로데오몰)	1/1	-	-	-
2		116	40	대	18.2	18.2			1/1			
3		116	49	대	1,878.5	1,878.5			1/1			
4		116	69	대	74.1	74.1	[수탁자] 대신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 파이낸스센터)	1/1			
5		116	71	대	23.6	23.6			1/1			
합계					2,027.0	2,027.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종량구 상봉동	116	49	대	제2종근린 생활시설, 차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006.01.06.	3,737.84	1	3	[위탁자] 주식회사 상봉청년주택 [수탁자] 대신자산 신탁주식회사	-	-	-	116-26, 40, 69, 71
합계								3,737.84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종량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종량구 상봉동 116-49일원	-	증) 2,027.0	2,027.0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 02-2133-6293)와 중랑구청 2층 건축과(☎ 02-2094-22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6-26, 116-40, 116-49, 116-69, 116-71
- 면 적 : 2,027.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상봉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 상봉청년주택
- 대표자 성명 : 이 광 서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984호(별내동, 별내로테오몰)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2,027.0	100.0	임대주택
합 계	2,027.0	100.0	-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584인

2) 주택건설계획 : 299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5형	31	10.4	31	5.3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 공급
	54형	23	7.7	61	10.4	
	57형	5	1.8	14	2.4	
	65형	4	1.3	11	1.9	
	84A형	4	1.3	11	1.9	
	84B형	4	1.3	11	1.9	
	소 계	71	23.8	139	23.8	
공공임대주택 (SH선매입)	25형	50	16.7	50	8.6	
	소 계	50	16.7	50	8.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5형	48	16.0	48	8.2	
	54형	61	20.4	162	27.7	
	57형	16	5.4	43	7.4	
	65형	17	5.7	46	7.9	
	84A형	18	6.0	48	8.2	
	84B형	18	6.0	48	8.2	
	소 계	178	59.5	395	67.6	
합 계		299	100.0	584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하여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공공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지상 1~2층	건축면적 : 1,087.84	중량구체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중량구체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시설 용도 및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향후 중량구청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대상지내 건축물은 현재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고,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며, 산림지역, 조정녹지 등은 분포치 않음

- 사업시행에 따른 조경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 녹지, 옥상녹화 등) 조성 등 환경 보전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임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27.0	-	2,027.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7.0	감) 2,027.0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2,027.0	2,027.0	1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2,027.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2,027.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2,027.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27.0	-	2,027.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027.0	-	2,027.0	100.0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지 번	면 적(㎡)	
-	-	2,027.0	상봉동 116-26	32.6	공동개발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상봉동 116-40	18.2	
			상봉동 116-49	1,878.5	
			상봉동 116-69	74.1	
			상봉동 116-71	23.6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공동개발 지정 - 면적 : 2,027.0㎡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	A	• 공동주택(주거복합)^{주)}	• 상봉동 116-26, 116-40, 116-49, 116-69, 116-7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B	• 단독주택(용도복합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수련시설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 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A	• 지정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상봉동 116-49 외 4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B	• 불허용도 신설	• 상봉동 116-26, 116-40, 116-49, 116-69, 116-71 역세권 청년주택 필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따른 용도를 반영하여 불허용도 계획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준용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960%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
최고높이	• 8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망우로)

■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건폐율	· 60%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일반상업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체계 변경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960% 이하	
높이	· 8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망우로) - 망우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저침도 간선변 기준높이상 80m 기준 준용

■ 용적률 적용기준(신설)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 공공기여율(㉔+㉕) : 515.89㎡(25.45%) ㉔ 공공시설 : 337.18㎡(16.63%) (대지지분 67.98㎡ + 환산부지 269.20㎡) ㉕ 공공임대주택 : 178.71㎡(8.82%) → 23세대	· 기본 용적률 680% 이하 부여 ·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 률 부여
	· 완화용적률(278.59%)의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2,027.0㎡ × 278.59% × 50% = 2,823.53㎡ 이상(139.30%)	· 추가 공공기여율 : 139.86%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2,834.95㎡ → 48세대	
건축물 용도 구분	주거	·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71세대 - 25형(31세대), 54형(23세대), 57형(5세대), 65형(4세대), 84A형(4세대), 84B형(4세대) 계획 · SH 매매입 : 50세대 - 25형(50세대) · 공공지원임대주택 : 178세대 - 25형(48세대), 54형(61세대), 57형(16세대), 65형(17세대), 84A형(18세대), 84B형(18세대)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 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개방형 발코니, 돌출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 고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커뮤니티시설 설치 면적 150㎡ 이상	· 지상 24층 : 165.97㎡ 계획 (코인세탁실 : 23.54㎡, 워크스테이션 : 25.19㎡, 입 주민 운동시설 : 117.2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3)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망우로) :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지정 - 간선도로변(망우로) :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	· 대상지가 접한 간선도로변에 3m 폭원의 건축한계선 지정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 - 간선도로변(망우로) : 3m(보도부속형)	지침도 참조

나) 공공기여계획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세대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680% 이하 (부지면적)	· 기본공공기여율 : 25% 이상주) (부지면적 506.75㎡ 이상)	· 부지면적 기준 : 515.89㎡ (25.45%) - 공공시설 : 337.18㎡ (16.63%) (대지지분 67.98㎡ + 환산부지 269.20㎡) - 공공임대주택 : 178.71㎡ (8.82%) → 23세대	총 29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71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960% 이하 (연면적)	· 추가공공기여율 : 완화용적률 1/2 이상 (958.59%-680.00%)/2 = 139.30% 이상 (연면적 2,823.53㎡ 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2,834.95㎡ → 48세대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5)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4.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등)을 계획

2) 사면 및 지반재해

- 지하굴토 공사시 사업지구에 알맞은 지하터파기 공법 선정
 - ① 터파기 계획 : 흙막이공법 적용
 - ② 흙막이 벽체 : C.I.P 벽체 적용
 - ③ 지보재 : 버팀대(STRUT) 지지공법 적용
 - ④ 차수 및 지반보강 : S.G.R. Grouting 공법 병행 적용

3) 지진재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기타재해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등 발생 저감을 위해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사업지구 경계부로 가설방음벽 등 설치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수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중랑구 상봉동	116	26	대	32.6	32.6	[위탁자] 주식회사 상봉청년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984호 (별내동, 별내로데오몰)	1/1	-	-	-
2		116	40	대	18.2	18.2			1/1			
3		116	49	대	1,878.5	1,878.5			1/1			
4		116	69	대	74.1	74.1	[수탁자] 대신자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 파이낸스센터)	1/1			
5		116	71	대	23.6	23.6			1/1			
합계					2,027.0	2,027.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중랑구 상봉동	116	49	대	제2종근린 생활시설, 차고	철근콘크 리트구조	2006.01.06.	3,737.84	1	3	[위탁자] 주식회사 상봉청년주택 [수탁자] 대신자산 신탁주식회사	-	-	-	116-26, 40,69, 71
합계								3,737.84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위 치	연면적(㎡)	비 고
신설	공공시설	지상 1~2층	1,087.84	설치 후 중랑구청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중랑구청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시설 용도 및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향후 중랑구청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준용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함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계	2,027.0	100.0	-	-	-
주택건설용지	2,027.0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